

의안번호	2218988
의 퇴 인	서천호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B2630

예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6억 7,700만원(연평균 39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등 실시 (안 제36조의2·제36조의3 등)	3,455	3,890	3,999	4,110	4,225	19,677	3,935

주: 본 추계 결과는 해양수산부의 직급별 평균 급여,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유사 사업의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및 급여, 기본경비·사업비 등 예산 편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국제협약검사) 신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활동에 사용되는 어선은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36조의2 (항만국통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어선의 구조·설비·어획물 또는 화물의 운송방법 및 어선원의 어선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입항예정인 외국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어선의 항해가 부당하게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36조의3 (외국의 항만국 통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어선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어선에 대하여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어선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36조의5 (국제협약검사 등의 수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제36조의3에 따른 특별점검 2. 제36조의2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 3.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업무 4. 제41조의3에 따른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직접 수행에 관한 업무	재량규정
5	안 제41조(검사 업무 등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제1항) <u><신 설> 3의2. 제22조의2에 따른 국제협약검사</u>	의무규정
6	안 제41조의3 (대행업무의 차 질에 따른 조치)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4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2조의2(국제협약 검사) 신설	—	• 미대상 — 국제협약검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 선급에서 어선 소유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받아 수행할 예정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3	안 제36조의2(항만국통 제)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등을 참고 — 항만국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선원안전 감독관 증원 및 사업비 추계
4	안 제36조의3(외국의 항 만국통제 등)		
5	안 제36조의5(국제협약 검사 등의 수행)		
6	안 제41조의3(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신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어선 안전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이 발효 예정(2027.2.24. 발효 예정)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항만국통제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참고자료] 「케이프타운 협정」 개요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기국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본부 인원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어선원안전감독관 인원 45명(6급 9명, 7급 36명) 등 총 47명(5급 1명, 6급 10명, 7급 3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인원의 보수·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 및 사업비’를 추계함

- 해양수산부는 현재 일반선박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항만국통제의 소요시간 및 연평균 무역항 입출항 국내외 원양어선 수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인원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해양수산청의 어선원안전감독관 인원 45명(6급 9명, 7급 36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표 2] 해양수산부의 개정안에 따른 인원 증원(안)

□ (본부 증원) 2명(5급 1명, 6급 1명)	
○ 「케이프타운 협정」 국내법 수용 제·개정, 기국통제 및 항만국통제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필요	
* 일반선박은 유사 협약인 「국제해상인명협약」(SOLAS)을 중심으로 기준마련(해사산업기술과, 11명)과 국제협약대응(국제해사팀, 7명) 업무를 각각 과·팀에서 수행 중	
□ (지방해양수산청 증원) 45명(6급 9명, 7급 36명)	
○ 개정안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기국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한 어선원안전 감독관 인력 필요	
<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관련 개정 내용 >	
구 분	개 정
① 항만국 통제(외국어선) (안 제36조의2 관련)	국내 입항하는 외국어선이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조치
①통제방법	소속 공무원이 국내입항 외국어선에 직접 승선하여 점검
②시정조치	구조·설비·어획물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달 → 수리 등 시정조치
③출항정지 명령	구조·설비·어획물 등의 결함으로 어선·승선자 위험 우려 → 출항정지
④이의신청 등	시정조치·출항정지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명령의 적법성 조사등 규정
② 기국통제(국내어선) (안 제36조의3 등 관련)	국내 어선소유자는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하여 국제협약 준수
①특별점검	외국정부의 항만국통제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국내어선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어선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
②예방조치	외국항만에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의 구조·설비 등 특별점검
③항해정지명령 등	어선 안전확보를 위해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 명령 가능
④공표	외국에서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어선명, 출항정지 사실 등 공표 가능
○ 일반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소요 시간(적당 약 38시간)과 연평균 무역항 입출항 국내외 원양어선 척수(연평균 2,397척)를 감안하여 소요인력 총 45명* 산출	
* (38시간 × 2400여척) ÷ 1인당 연간근무시간 = 45.6명	

자료: 해양수산부

- 인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공간은 현재 해양수산부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유희공간과 기존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202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추계기간 첫째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월분(3월~12월)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1인당 보수)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의 보수는 해양수산부(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직급별 평균 연봉액에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

[표 3] 해양수산부(본부,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평균 연봉액 등 급여(2026년)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소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5급	75,686	5,400	3,000	1,920	480	81,086
6급	66,520	4,620	2,220	1,920	480	71,140
7급	48,029	4,560	2,160	1,920	480	52,589

주: 1. 5급은 해양수산부 본부 기준, 6급 및 7급은 지방해양수산청 기준 평균 연봉액을 적용함
 2. 호봉제 급여 대상자(6급 이하)의 연봉액에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포함함
 3.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6.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정부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42억 2,500만원으로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표 4] 보수 총액: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5급	인원 수	1	1	1	1	1	—
	1인당 보수	70 ¹⁾	86	89	91	94	—
	소 계(A)	70	86	89	91	94	429
6급	인원 수	10	10	10	10	10	—
	1인당 보수	61 ¹⁾	75	78	80	82	—
	소 계(B)	611	755	777	801	825	3,768
7급	인원 수	36	36	36	36	36	—
	1인당 보수	45 ¹⁾	56	57	59	61	—
	소 계(C)	1,625	2,009	2,069	2,131	2,195	10,028
보수 총액(A+B+C)		2,305	2,849	2,935	3,023	3,113	14,225

주: 1)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은 개정안 시행일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0개월분(3월~12월)에 대한 보수만을 반영

2) 단수 조정 등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관부담금

□ 기관부담금은 보수 총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8억 9,200만원으로 추계

[표 5] 기관부담금: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총액(A)	2,305	2,849	2,935	3,023	3,113	
기관부담금 요율(B)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기관부담금(A×B)	303	376	390	404	420	1,8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기본경비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10.41%²⁾를 앞서 추정된 보수 총액에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4억 8,100만원으로 추계

[표 6] 기본경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총액(A)	2,305	2,849	2,935	3,023	3,113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B)	10.41	10.41	10.41	10.41	10.41	
기본경비(A×B)	240	297	306	315	324	1,4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자산취득비

- 증원 인력에 대한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인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활용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3,900만원으로 추계

[표 7] 자산취득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직원 수(A, 명)	47	—	—	—	—	—
인당 자산취득비(B, 천원)	5,078	—	—	—	—	—
자산취득비(A×B, 백만원)	239	—	—	—	—	2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2026년도 예산 중 기본경비(14,367백만원)를 인건비(137,993백만원)로 나누어 산출

마. 사업비

- 개정안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항만국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유사 사업인 일반선박(화물선, 여객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제도 운영 사업’의 사업비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8] 항만국통제 제도 운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26)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항만국통제 제도 운영)	- 일반선박(화물선, 여객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제도 운영, 현재 감독관 46명 운용 중 · 어선원안전감독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훈련 110백만원 · 검사 장비 등 구매 71백만원 · 검사차량 임차료 102백만원 · 유류비 및 여비 85백만원	368 ¹⁾

주: 1) 국제협력 사업비 100백만원은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8억 4,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동안 사업비는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9] 사업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업비	368	368	368	368	368	1,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96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2,305	2,849	2,935	3,023	3,113	14,225
기관부담금	303	376	390	404	420	1,892
기본경비	240	297	306	315	324	1,481
자산취득비	239	—	—	—	—	239
사업비	368	368	368	368	368	1,840
합계	3,455	3,890	3,999	4,110	4,225	19,677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해양수산부의 직급별 평균 급여,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유사 사업의 사업비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및 급여, 기본경비·사업비 등 예산 편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케이프타운 협정」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 요

- (공식 명칭)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 (채택일/장소) 2012년 10월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발효 조건) 2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가입하고, 각국의 24m 이상 국제항해 어선의 총 합계가 3,600척 이상인 경우(1년 뒤 시행)
⇒ '26.2.24. 발효조건 충족 (28개국, 3,754척), '27.2.24. 발효 예정

□ 주요 내용

- (목적) 어선의 건조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 마련
- (협정문 구성) 적용대상, 발효기준 등을 명시한 총칙과 구조·설비, 복원성, 구명설비, 무선통신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부속서로 구성
 - * (1장)총칙, (2장)구조, (3장)복원성, (4장)기관 및 전기, (5장)방화 및 소방, (6장) 선원보호, (7장)구명설비, (8장)선원훈련, (9장)무선설비, (10장)항해설비
- (적용 대상) 24미터 이상 공해 작업 어선→ 원양어선 185척
 - 신선(新船) 적용이 원칙이고 현존선은 부분 적용 명시
 - * 기존어선은 7~10장 적용(5~10년 유예 가능), 원양어선은 적용되나 연근해 어선은 제외

케이프타운 협정(배 길이 24m ↑ 어선 대상)				장	해상인명안전협약* (500톤 ↑ 화물선 등 대상)	
장	내용	적용				적용 시기
		신조선	현존선			
1	총칙	-	-	◆ 발효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 년 뒤 발효 ▪ 신조선 : 발 효시 ▪ 현존선 : 경 과조치 5년 (다만, 무선설 비는 경과조치 10년)	1	일반사항
2	구조 및 설비	24m 이상	-		2	구조복원성기관전기소화설비
3	복원성	24m 이상	-		3	구명설비
4	기관 및 전기설비	45m 이상	-		4	무선설비
5	소방설비	45m 이상	-		5	항해안전
6	선원보호	24m 이상	-		6	화물운송
7	구명설비	45m 이상	45m 이상		7	위험물운송
8	비상조치·소 집 및 훈련	24m 이상	24m 이상		8	원자력선
9	무선설비	45m 이상	45m 이상		9	안전운항 관리
10	항해설비	24m 이상	24m 이상		10	고속선 안전조치
				11	해상안전 특별조치	
				12	산적화물선 추가조치	
				13	준수의 검증	
				14	극지운항 안전조치	

* 해상인명안전협약 예외대상: 어선 / 군함 / 500톤↓ 화물선 / 무동력선 / 목선 / 요트